

의안번호	2215457
의 퇴 인	윤호중의원
회 답 일	2026.5.6.
추 계 번호	25D723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35억 1,900만원, 2031년 141억 8,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82억 6,100만원(연평균 136억 5,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공익위원회 설치	13,519	13,196	13,518	13,849	14,185	68,261	13,6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공익위원회의 설치)	-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을 둠 - 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부를 둘 수 있음	
2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함 - 위원장은 정무직,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 -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안 제16조(사무기구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	
4	안 제24조(공익법인지원)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5	안 제26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공익위원회의 설치)	○	—
2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	—
3	안 제16조(사무기구의 설치)	○	—
4	안 제24조(공익법인지원)	×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및 조세 감면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5	안 제26조(조세 감면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익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조직을 참고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를 구분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공익위원회는 법률체계, 위원의 위촉 절차, 업무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유사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비교

구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위원회(안)
근거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457)
소속	국무총리 (업무상 독립성 규정)	국무총리 (업무상 독립성 규정)	국무총리 (업무상 독립성 규정)
지위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구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위원회(안)
위원구성	11명 대통령지명·임명(4/상임1) 국회선출·대통령임명(4/상임2) 대법원장지명·대통령임명(3)	15명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위원장1/부위원장3)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상임위원3) 대통령 임명·위촉(위원11)	9명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위원장1)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상임위원1, 위원7)
위원장	1명 (장관급)	1명 (장관급)	1명 (장관급)
부위원장	—	3명 (차관급)	—
상임위원	3명 (차관급)	3명	1명
비상임위원	7명	8명	7명
위원임기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의사(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공익법인 인가 취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기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2025년 예산 (일반회계, 백만원)	42,414	105,090	—
인건비	21,864	52,132	—
기본경비	10,131	8,128	—
사업비	10,419	44,830	—

자료: 각 기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안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되, 그 외의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부위원장 3명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위원 8명은 비공무원으로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사무기구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급별 인력 구성비에 따라 규모를 추정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업비, 자

산취득비 및 사무실 개선공사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따른 공익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는 1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수인 6명의 16.67%이므로, 직급별 인력 규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6.67%로 가정함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기구의 정원, 직무·직급별 정원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적용하여 제정안에 따른 공익위원회 사무기구 인력을 직무·직급별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3]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익위원회 인력 직급별 정원: 2026년

(단위:천원)

직급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원/공익위원회 정원(%)	공익위원회 사무기구 정원
장관급(위원장)	1	16.67%	1
고위공무원	15		3
3급	14		2
4급	72		12
5급	174		29
전문경력관 가군	8		1
6급	141		24
7급	19		3
8급	15		3
9급	12		2
전문경력관 다군	1		1
별정직(6급상당)	1		1

주: 연봉액은 연봉(연금),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것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익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을 적용하되 정보화 관련 사업비는 제외함

- 이를 적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 현황: 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대비 비중	주요내역	합계
인건비	-	(인건비) 53,440	90,071
기본경비	15.3%	(기본경비) 8,117	
사업비	53.2%	(정보화사업 제외) 28,45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사무기구 설치에 따른 보수와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

원 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및 자산취득비 단가¹⁾를 적용해 추정하며, 사무공간은 국가기관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되 사무실 개선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참고하여 추계기간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전원위원회에 한정하여 추계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수

- 제정안에 따른 보수는 공익위원회 사무기구 인원수에 직급별 1인당 평균 연봉액을 곱하여 산출함
- 2026년 기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직급별 1인당 연봉액을 참고하여 추정한 공익위원회 직급별 연봉액은 다음 표와 같음

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자산취득비 단가(2025.4. 기준)

(단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	2.4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효율(%)	13.067	13.129	13.193	13.285	13.380	13.475	13.559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5,6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공익위원회 인력 직급별 연봉액(국민권익위원회 연봉액 참고): 2026년

(단위:천원)

직급	직급별 정원(A)	연봉액(수당 포함, B)	직급별 연봉액(C=A×B)
장관급(위원장)	1	172,239	172,239
고위공무원	3	158,737	476,211
3급	2	134,459	268,918
4급	12	116,181	1,394,172
5급	29	88,290	2,560,410
전문경력관 가군	1	92,341	92,341
6급	24	63,361	1,520,664
7급	3	46,792	140,376
8급	3	42,538	127,614
9급	2	43,560	87,120
전문경력관 다군	1	45,794	45,794
별정직(6급상당)	1	44,007	44,007
합계	82	-	6,929,866

주: 연봉액은 연봉(연금),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것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직원 보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공익위원회 설치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7,096	7,267	7,441	7,620	7,802	37,2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관부담금

□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면 기관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7] 공익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관 부담금	보수	7,096	7,267	7,441	7,620	7,802	-
	기관부담금 요율	13.13%	13.19%	13.29%	13.38%	13.48%	-
	소계	932	958	989	1,020	1,052	4,9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보수에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15.3%)을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사무기구 기본경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8] 공익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 경비	보수	7,096	7,267	7,441	7,620	7,802	—
	기본경비 비중	15.3%	15.3%	15.3%	15.3%	15.3%	—
	소계	1,086	1,112	1,138	1,166	1,194	5,6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사업비

- 제정안에 따른 사업비는 보수에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53.2%)을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공익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9] 공익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업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사업비	보수	7,096	7,267	7,441	7,620	7,802	—
	사업비 비중	53.2%	53.2%	53.2%	53.2%	53.2%	—
	소계	3,683	3,771	3,862	3,955	4,049	19,3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자산취득비

- 제정안에 따라 공익위원회 및 사무기구 인력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충원되는 공익위원회 및 사무기구 인력의 자산취득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10] 공익위원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자산취득비	사무기구 인원(명)	82	-	-	-	-	-
	단가(천원)	5,080	-	-	-	-	-
	소계	417	-	-	-	-	4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사무실 개선공사 비용

- 공익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에 따라 사무실 개선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무실 개선공사 비용은 2027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되, 국민권익위원회 공사실적 단가²⁾에 사무공간 소요면적을 곱하면, 1억 9,500만원(2025년 기준)이고, 동 금액에 건설공사비지수(연평균 5.46%³⁾)을 반영하면 2억 1,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사무공간 소요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직급별 1인당 사무실 면적을 적용하여 추계함

2) 2025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공사실적 단가

구분	공사비 단가(백만원)	산출근거
건축공사	1㎡당 0.103	2025년 기관추진 공사실적 단가적용(국민권익위원회 본부, 정부합동민원센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기공사	1㎡당 0.01	
통신·소방공사	1㎡당 0.017	
바닥공사	1㎡당 0.044	
기타 공사비용	1㎡당 0.061	
합계	1㎡당 0.23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2020~2025

(건설공사비지수: 매년 2월 기준, 2020년=100)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거주용건물	100.00	104.67	120.36	126.90	129.77	130.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1] 공익위원회 직급별 사무실 면적: 2026년

(단위: 명, m²)

직급	공익위원회 정원(명)	1인당 사무실 면적(m ²)	직급별 사무실 면적
장관급(위원장)	1	165	165
고위공무원	3	33	99
3급	2	17	34
4급	12	7	84
5급	29	7	203
전문경력관 가군	1	7	7
6급	24	7	168
7급	3	7	21
8급	3	7	21
9급	2	7	14
전문경력관 다군	1	7	7
별정직(6급상당)	1	7	7
사무실 면적 합계(m ²)	—	—	830

주: 연봉액은 연봉(연금),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것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 위원회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 위원회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비상임위원 수에 연 평균 회의개최 횟수와 회의당 평균 회의참석수당을 곱하여 추계함
 - 비상임위원은 7명, 회의개최횟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개최 횟수를 참고하여 연 평균 21회로 가정함
 -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참석비와 안전검토비로 550,000만원이 지급되고, 2시간 이상인 경우 650,000원이 지급되며, 회의 중 50%가 2시간 이상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평균 회의참석수당은 600,000원임
 -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간 8,800만원임

아.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35억 1,900만원, 2031년 141억 8,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82억 6,100만원(연평균 136억 5,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보수	7,096	7,267	7,441	7,620	7,802	-	-
기관부담금	932	958	989	1,020	1,052	-	-
기본경비	1,086	1,112	1,138	1,166	1,194	-	-
사업비	3,683	3,771	3,862	3,955	4,049	-	-
자산취득비	417	-	-	-	-	-	-
사무실 공간 개선	217	-	-	-	-	-	-
회의참석수당	88	88	88	88	88	-	-
합 계	13,519	13,196	13,518	13,849	14,185	68,261	13,6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공익위원회 사무처의 인력 구성, 직급별 연봉액,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중이 현 국민권익위원회와 같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